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나524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6. 7. 8.

판결 선고 2016. 7. 20.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4가단20164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11.2㎡에 관하여 2014. 10.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11.2㎡에 관하여 2013. 9. 24.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해 오다가, 2013. 7.1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년1335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위 조정신청사건에서 2013. 9. 1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3.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사건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3, 6, 9항 기재 건물(이하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사실상 하나의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작성되어있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4, 5, 7, 8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있다.

라. 서울 중구 C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2. 3.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4개의 등기부등본에 건물대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부동산 목록에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조정 조서 목록에도 이 사건 토지가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 조항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조항이외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4, 28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4. 10. 7.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2002.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동생인 I 명의로 보유하던 고양시 J 토지를 매각한 대금 8억 원,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자금 2억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으로 매매대금 18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의 재혼에 따른 재산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05.12. 7.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작성 등부 2005년 제2581호로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2002년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시 중구 L/M/N/O/P 등 5필지의 건물은 처인 A가 동생인 I 명의로 된 고양시 J 소재 전답을 매매하여 매입대금 전액을 지불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하며"라는 기재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면서 G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G를 운영하였고, 2003. 11. 19. 및 2010. 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G로 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다.

4) 국세청은 G에게 부과된 세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3형제88075호), 피고는 그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5)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 권리관계 역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용중, 판사 이진영

별지

목 록

1. 서울 중구 D 대 216.2㎡
2. 서울 중구 D 제1호
연와조 스텔트층2계건 주택 겸 영업소 1동
건평 18평
외2계평 18평
3. 서울 중구 D 제2호 [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Q
철근콘크리트조도단층3계건 주택겸 영업소 1동
건평 32평
외2계평 32평
3계평 32평
지하실 10평
4. 서울 중구 R 대 33.1㎡
5. 서울 중구 S 대 33.1㎡
6. 서울 중구 R, S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Q
목조 스텔트층 2계건점포 1동
건평 12평 4홉 4작
외2계평 12평 4홉 4작
7. 서울 중구 T 대 11.2㎡
8. 서울 중구 U 대 92.2㎡
9. 서울 중구 U, T [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V
철골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46.36㎡
2층 44.53㎡
지하층 81.34㎡ 끝.